

▶ 문의 : 협회 기반조성사업부(02-890-8300)



기술표준원

2010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제품안전성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

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, 협회가 전담기관으로 사업진행

사업목적 및 지원규모

- 제품 관련 산업에 최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안전이 내재된 고기능·고품질 기술 등을 융·복합하여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제품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
- 기술·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,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받음.
단, 제품의 인체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면제
- '10년 지원규모 : 총 출연금 38억원(신규 : 28억원, 계속 : 10억원)



신청자격

■ 주관기관

-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

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(단, 표준산업분류 제10-33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)

- 국·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
-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- 「민법」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

■ 참여기관

-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

■ 지원내용, 조건 및 공모방식

■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과제당 2억원 이내
- 개발기간 : 1년 이내 원칙
- 지원대상 :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및 「전기용품 안전관리법」에 의한 공산품·전기용품 등 분야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 명품화 기술개발
※ 식품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, 소방기구, 독극물, 자동차, 철도, 항공, 무기류, 고압가스용기 등을 지원제외

■ 지원조건

-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지원하고, 민간이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함

〈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〉

참여기업수	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	정부출연금 지원비율	민간부담금 현금비율
1개	중소기업	3/4이내	민간부담금 총액(현금+현물)의 10% 이상
	대 기업	1/2이내	민간부담금 총액(현금+현물)의 20% 이상
2개 이상	중소기업수 2/3 이상	3/4이내	민간부담금 총액(현금+현물)의 10% 이상
	중소기업수 2/3 미만	1/2이내	민간부담금 총액(현금+현물)의 20% 이상

※ 단,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임

■ 공모방식 : 수요조사과제 지정공모(수요조사과제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)

단, 개발성과의 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자유과제는 지원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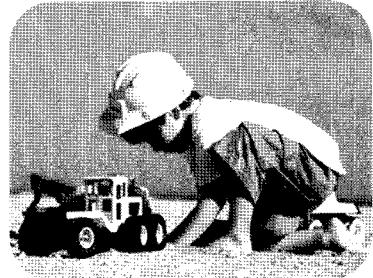
■ 신청기간 : 2010년 2월 17(수) ~ 3월 19일(금) 18:00까지

■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○ 신청서식: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(www.ekesa.or.kr)

○ 접수처 : (우편번호 : 152-848)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-12 마리오타워 310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

○ 제출서류 : 제출공문 1부,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(전자파일은 E-mail로 별도 제출),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



평가 · 선정절차

○ 서면평가 :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중복성 여부, 신청자격 등 검토
※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실시

○ 대면평가 : 산·학·연 전문가로 '평가위원회'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, 안전성 및 사업성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

○ 최종선정 : 대면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'조정위원회'에서 최종 심의·확정하여 결정

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

■ 기술료 징수기준

○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"성공"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
■ 징수방법

○ 정액기술료 :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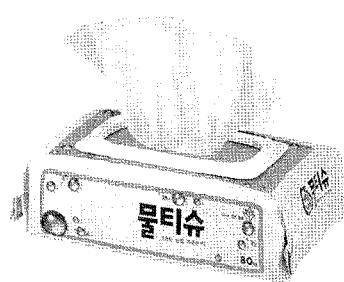
〈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〉

주관기관 유형	정액 기술료율
대 기업	총 지원 출연금의 40%
중견기업 *	총 지원 출연금의 30%
중소기업	총 지원 출연금의 20%

* 중견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(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체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)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.

지원제외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참여기업, 위탁기관, 대표자, 총괄책임자를 말한다. 이하 "사업에 참여하는 자"라 한다)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


사업일정

- 2010. 2~3월 :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
 - 2010. 3월 :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
 - 2010. 4월 :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(평가위원회)
 - 2010. 5월~ : 과제확정,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- 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사업안내 및 문의처

- 시행기관 :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(☎ 02-509-7238~40, 팩스 : 02-509-7305)
 - 전담기관 :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(☎ 02-890-8300, 팩스 : 02-890-8309, 홈페이지 : www.ekesa.or.kr)
- * 공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.